

**1과목 : 임의 구분**

1. 「변호사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변호사 甲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사무직원 A를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주재하게 하였다.
  - ② 변호사 乙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판장의 지시로 사기사건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는데,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마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 ③ 변호사 丙은 친구 C의 소개로 의뢰인 D로부터 공사대금 청구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500만 원 중 50만 원을 C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
  - ④ 변호사 丁은 수사 중인 횡령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 E를 변호하였다.
2. 변호사 징계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영구제명이나 제명의 경우 징계처분정보를 최초 게재일부터 5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한 자뿐 아니라 선임하려는 자도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 신청 목적 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외국법자문사와 합작법무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은 사람을 말한다.
  - ②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가 포함되더라도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사무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④ 합작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분야 자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4.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 ②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
  - ③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권이 인정되므로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5. L법률사무소의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여 담당변호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 A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L법률사무소가 공동법률사무소인 경우, 변호사 甲뿐만 아니라 L법률사무소에 속한 다른 변호사들도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②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인 경우,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성원 변호사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③ L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유한)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라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을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L법률사무소가 법무조합인 경우, 변호사 甲이 구성원 변호사라면 甲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변호사들은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6. 법무법인의 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 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하여야 한다.
  - ③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으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인 시·군·구(자치구)에는 별개의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④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는 회원들의 개인정보인 학력과 경력도 포함된다.

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수임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인신 구속 여부도 기재하여야다.

ㄷ. 변호사에게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으나, 의뢰인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없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ㄱ, ㄴ, ㄷ
8. 「변호사윤리장전」 중 사건의 수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ㄱ. 주택민도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ㄴ.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ㄷ. 변호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의뢰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나, 예외적으로 의뢰인의 지휘·감독을 받을 때에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

ㄹ.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은 의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 ③ ㄷ, ㄹ                      ④ ㄱ, ㄴ, ㄹ

32. 변호사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참여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②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③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④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소개된 사무직원이 반드시 금품 등이 수수될 때까지 사무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개될 당시에는 사무직원이어야 한다.

33.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원지방법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甲이 퇴직한 지 3개월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계속된 민사사건 중 수원지방법변호사회가 공익 목적으로 지정한 개인회생사건을 통상 수임료의 3분의 1 가격으로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 ② 대구지방법검찰청장으로 퇴직한 변호사 乙은 퇴직 직후 L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대구지방법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L법무법인이 수임하는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 ③ 변호사 丙은 판사로 재직 시 X회사의 회생절차 중 Y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관한 직무를 취급하였다. 丙이 변호사 개업 2년 후 X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X회사와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Z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丁은 퇴직 후 1년간 서울고등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기간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34. 「변호사법」상 법조윤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특정변호사에게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퇴직공직자가 범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범무법인은 취업일부터 2년 동안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업무활동내역을 법조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5.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ㄱ.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연수를 받을 의무는 면제되지만 윤리연수를 받을 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

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ㄷ.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는 사내변호사에게 다른 회사의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수임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ㄹ. 사내변호사로서 겸직허가를 받은 이상 회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더라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② ㄴ
- ③ ㄴ, ㄷ                      ④ ㄴ, ㄹ

36. 「법관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법관 甲은 자신이 소속한 학회의 발표의뢰를 받고 최근 선고된 다른 법원 하급심 판결에 관하여 학술 목적으로 학회에서 의견을 표명하였다.

ㄴ. 법관 乙은 친구인 A의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분쟁상대방을 직접 만나 A를 위하여 협상하였다.

ㄷ. 법관 丙은 친구인 B가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B가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해당 재판부 법관들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B에게 제공하였다.

ㄹ. 법관 丁은 진행 중인 사건을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두 당사자를 법정미 아닌 판사실로 불러 면담하였다.

- ① ㄱ, ㄹ                              ② ㄴ, ㄷ

- ③ ㄷ, ㄹ                      ④ ㄴ, ㄷ, ㄹ

37. 甲은 대전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위 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고 2017. 2. 1. L법무법인에 취업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 재직 중 참여한 바가 없더라도 L법무법인인 그 사건의 상고대리인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甲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甲이 재판연구원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수임 사건 수와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1년까지는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에 해당한다.
- ④ 甲이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판장의 지시로 특정사건을 검토한 후 보고서 작성에 그친 것이 라면, 甲은 L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로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38. 검사의 직무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 ② 검사는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공표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 ③ 검사는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지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사건 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이외의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39. 변호사 甲은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처럼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보수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 및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대법원이 위 상고를 기각할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甲은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 ② 변호사 甲이 위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형의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도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甲에게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변호사 甲이 위 형의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재등록 후 직무 외 품위손상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다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을 영구제명할 수 있다.

40.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L법무법인의 구성원 아닌 변호사 甲이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서 A와 B 사이의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처리하였더라도 L법무법인은 그 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을 수임할 수 있다.

- ②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L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 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한다면 X회사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사건을 제한 없이 수임할 수 있다.
- ③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丁은 C를 대리하여 D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D가 E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 丁에게 수임을 부탁하는 경우 변호사 丁은 C의 동의를 받아야 수임할 수 있다.
- ④ L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戊는 위 변호사 丁이 의뢰인 C와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L법무법인이 해산되면 비밀유지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④	②	③	②	①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③	④	①	④	②	①	④	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④	④	③	②	③	③	③	②	③	①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①	①	②	③	②	②	②	④	①	③